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신기술 인증 부정 표시자에 대한 형벌 규정의 과태료 전환〉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6535호

2026.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신기술 인증 부정 표시자에 대한 형벌 규정의 과태료 전환	2
2. 부칙	8
[참고자료]	1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2. 3.
3. 회 부 일 : 2026. 2.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기술 제품이 아닌 제품에 대해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삭제 및 제29조 신설)

Ⅲ. 검토의견

1. 신기술 인증 부정 표시자에 대한 형벌 규정의 과태료 전환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삭제, 제29조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벌칙) ① (생략) ②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제2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제29조(과태료)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해양수산과학 기술을 해양수산신기술(이하 “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조한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시설·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신기술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18조제2항).¹⁾

이러한 신기술 인증 표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법은 신기술 제품이 아닌 제품에 대해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제27조제2항).²⁾

-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수단에 법령에서 정한 특정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로,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이러

1)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8조(신기술 인증의 표시) ②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조한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시설·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신기술 인증에 관한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27조(벌칙) ②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2025년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출범하여 보고·검사 위반 등 18개 유형의 경미한 의무위반³⁾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개선과제를 추진한 바 있음.

- 개정안은 표시 방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내용임.

개정안을 통하여 경미한 위반행위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과도한 형벌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해양수산부는 최근 5년간 개정 대상 규정의 벌칙 적용 건수가 0건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과태료로 전환하더라도 제재의 억지력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행정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할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벌칙의 존재로 인해 법 위반이 제한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법 통과 시 과태료 전환 후 제재 완화의 효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헌법재판소(2018.8.30., 2017헌바368)는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

3) 통지·표시·조사·검사 등 「법령입안심사기준」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18가지([참고 1] 참조)

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단순한 의무태만 내지 의무위반)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형벌을 과할 경우 그 법정형의 종류와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당해 위반행위가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그르친 것이 아닌 한 그 처벌내용은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라고 판시하였으며,

이 결정의 반대의견은 “행정질서벌만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형벌을 도입한 것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는 의견을 제시함.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2026)」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수단에 법령에서 정한 특정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⁴⁾

□ 다만, 개정안에 따른 형벌의 과태료 전환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첫째, 현행법 제27조제1항⁵⁾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4)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6)」, p.605.

신기술 인증을 받거나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인증과 관련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인증 자체를 거짓으로 받은 경우와 인증 부정 표시의 경우를 동일하게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유사입법례⁵⁾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

법률	과태료 또는 벌금	상한액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과태료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00만원 -인증 부정 표시: 200만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500만원 -인증 부정 표시: 500만원
「국민건강증진법」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500만원 -인증 부정 표시: 500만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천만원 -인증 부정 표시: 2천만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벌금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500만원 -인증 부정 표시: 500만원
「수도법」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년/2천만원 -인증 부정 표시: 2년/2천만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년/3천만원 -인증 부정 표시: 500만원

따라서, 신기술 인증 부정표시에 대해서만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법 통과시 신기술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용 저해 가능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5)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7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받거나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참고 2] 참조

둘째, 개정안은 종전 벌칙인 500만원에 비해 낮은 금액인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과태료 상한액은 동일 유형의 과태료 상한액 입법례, 위반행위의 내용, 위반의 양태, 해당 분야의 특성, 행위주체, 그 밖의 정책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나⁷⁾,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2026)」에 따르면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일 금액으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신기술 인증 부정 표시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종전 벌금 금액보다 하향 조정해야 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을 제시함.

□ 참고로, 개정안에 따라 벌금 수입 감소 및 과태료 수입 증가 등으로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증감 규모를 합리적인 추계하기 곤란하므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대하여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보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음.⁸⁾

7)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6)」, p.607.

8) 국회예산정책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2. 부 칙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며,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려는 것임(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표] 개정안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제도의 계도 및 안내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또한,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면서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경우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지 않으면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법률이 개정된

미첨부 사유서, 2026. 2. 6.

경우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 제1조제2항·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⁹⁾에 따라 형벌로도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¹⁰⁾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형벌이 과태료로 전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벌에 처하고, 그 이후의 행위는 신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¹¹⁾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22

9)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11)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p.895-896

참고 1

「법령입안심사기준」 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구분	세부 내용
1	인허가 등 특정 영업이나 행위에 필요한 행정청의 인허가, 승인, 지정, 등록 등에 관한 의무 위반행위(미허가, 미승인 행위 등은 제외)
2	신고 특정 영업이나 행위를 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행정청에 문서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 를 위반하는 행위
3	보고 법령의 적용을 받는 개인, 법인이나 행정기관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단체 등이 특정한 사항의 보고의무나 자료제출 의무 를 불이행하는 행위
4	행정상 명령 행정청이 특정인에게 부과하는 일정한 법률상의 작위, 부작위 또는 수인의무 등을 불이행하는 행위 중 경미한 행위
5	조사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기관의 직원이 그 감독을 받는 사업장, 공장, 창고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를 조사하는 등 을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6	계획 업무수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계획, 대책, 규정, 기준 등을 수립·작성하고 이를 보고할 의무 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립한 계획 등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7	유사 명칭 법률상 특정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님에도 해당 자격명칭을 사용하거나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구성된 특정 기관의 명칭을 그 기관 외의 자가 사용하는 행위
8	교육 법률상 일정한 교육을 이수할 의무 가 있는 사람이 불이행하거나 관리자 등이 교육 대상자에 대해 교육을 시키지 않거나 교육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
9	강제 보험 의무보험에 가입할 의무 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부 하거나 보험사고 시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하는 행위
10	게시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서나 요금 등의 정보 를 영업소, 사업장 등에 게시하지 않는 행위
11	보존 법령에 따라 기록·보존되어야 할 사항 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와 장부를 비치 하거나 열람에 제공 하지 않는 행위
12	통지 특정 사실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통보, 설명할 의무 를 위반하거나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외부에 공지·공시할 의무 를 위반
13	인력 배치 업무상 특정 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인력을 선임, 지정, 배치하지 않는 행위
14	인증 사용이나 판매를 위해 사전에 검정이나 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 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로서 그 대상의 특성에 따라 형식승인, 검정, 형식검정, 형식등록 등 다양한 명칭으로 표현됨
15	검사 안전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받아야 하는 검사나 점검 을 받지 않는 행위
16	표시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수단에 법령에서 정한 특정사항 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을 위반하는 행위
17	토지 출입 행정청이나 사업시행자 등 권한 있는 자가 공사, 조사,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것을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 나 공무원 등이 토지 출입 시에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18	기타 준수사항 위반, 검직금지 등

참고 2

유사입법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0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4. 제86조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조사·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3.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 ② 제17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 1의2.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41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15조의2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인증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7.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녹색건축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자

「수도법」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득한자

1의5.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한 자